

광주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가단5418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C

피고D

변론 종결2023. 4. 14.

판결 선고2023.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E 사이에 2022. 5. 25.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E에게 광주지방법원 2022. 6. 21. 접수 제866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 주식회사의 E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전전 양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500493호로 '14,799,045원 및 그중 420만 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1. 24.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2. 1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1969. 5. 13. G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2명(E, H)을 두었고, G는 1988. 4.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와 G는 1988. 4. 24.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G는 2022. 5. 25. 사망할 때까지 별다른 주소변동 없이 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피고 역시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다. 한편, G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아들인 E, H이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2022. 5. 25.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단독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E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는 부동산이 없었고,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의 체납내역도 없었다. 위 분할협의 당시 위 아파트의 매매시세는 평균 1억 200만 원 정도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을1 내지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광주세무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 본부장, 광주지방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부 중 일방 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집에서 부부가 오랜 기간 함께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을 해오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함에 따라 생존 배우자가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자녀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방식으로 그 집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이전하여 생존 배우자의 단독 소유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거나 자녀양육 등을 담당한 데에 대한 보상 또는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이나 생존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의한 재산의 이전에 대한 사해행위 여부 판단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1)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가 E에 대해 이 사건 지급명령(2017. 12. 14. 확정)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아울러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E는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로 약 2,149만여 원(= 14,799,045원 + 2014. 3. 12.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약 67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E에게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E는 위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피고는 자신의 배우자인 G가 사망할 때까지 약 53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을 양육해왔고, 혼인생활을 시작한지 약 20년만인 1988년 4월경 남편인 G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에서 약 34년 이상 함께 거주해왔으며, 위 아파트 외에는 G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었다. 더욱이 E 외에 G의 다른 상속인(아들)인 H도 자신의 상속분을 모친인 피고에게 이전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동의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E를 포함한 피고의 자녀들은 위 아파트를 피고와 G의 공동재산으로 인식하면서 고령의 피고(당시 만 73세)가 여생 동안 위 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의미로 위

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의 E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분할협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관계, 위 아파트에 피고가 거주한 기간이나 경위, 위 분할협의의 실질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위 분할협의를 곧바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위 분할협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게 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와 E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수익자인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판사정영호

별지